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 송언석 · 백종헌 · 곽규택

김종양 • 박성민 • 박대출

구자근 • 권성동 • 성일종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산·학·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,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, 대상지도 산·학·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,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 2).

법률 제 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의2 중 "산·학·연 클러스터에"를 "혁신도시 내"로, "종합병원"을 "종합병원(그 분원을 포함한다)"으로, "건축에 필요한 비용을"을 "건축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의2(연구기관, 국제기구,	제45조의2(연구기관, 국제기구,
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	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
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	원)
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	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	<u>혁</u>
<u>산·학·연 클러스터에</u> 입주하	신도시 내
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	<u>종합병원</u>
<u>종합병원</u> 및 「국가과학기술	(그 분원을 포함한다)
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	
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대	
학에 대하여 시설의 <u>건축에 필</u>	
<u>요한 비용을</u> 지원할 수 있다.	건축・운영에 필요한 비용의
	<u>전부 또는 일부를</u>